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물등에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 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 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 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내용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선임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으로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5년이 되는 날
2.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다만, 해당 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다만, 해당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4.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이 끝난 날

제8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

록하여야 한다.

별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의2제1항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1.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특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2. 영 제3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중급기술자	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초급기술자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의2제1항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3 영 제3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초급기술자 이상	1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초급기술자 이상	1
	다. 영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초급기술자 이상	1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합니다”를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신고인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 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시 주민등록 번호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통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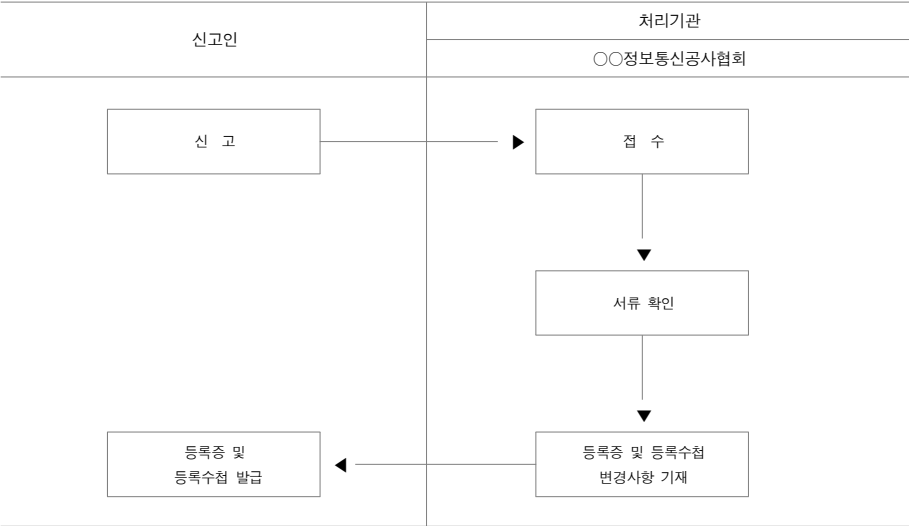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측시
신 고 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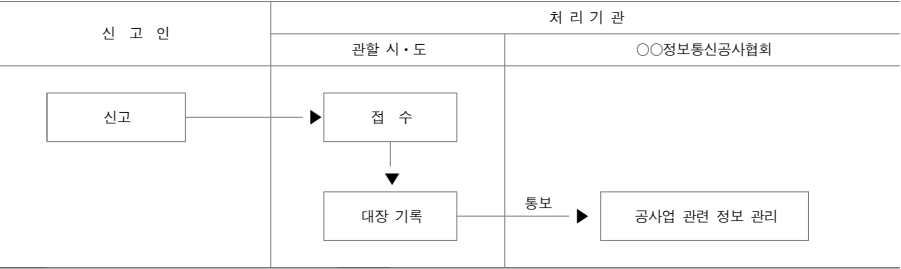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 해임 신고서

(알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급		선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정보통신공사법령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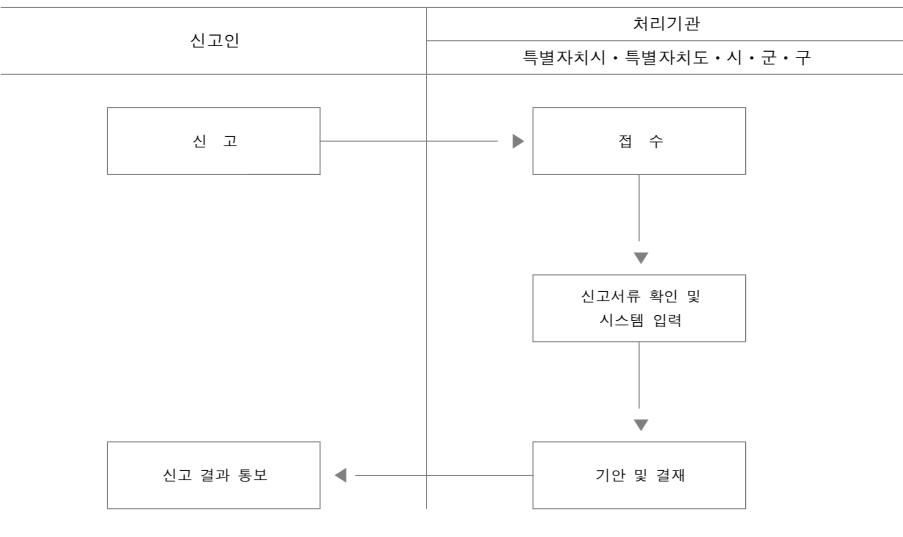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 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작성 방법
-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 그 밖의 건축물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 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신청사유			신청부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번호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선임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일련 번호	신고일	관리주체				대상 건축물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상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고유번호	주소	건축물/ 공동주택/ 기타	연면적/ 세대수	용도	선임/해임	선임일/ 해임일	등급	성명	경력수첩 발급번호

297mm×210mm[백상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영 제 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이하 대상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 또는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대상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4년 8월 18일

나.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5년 7월 18일

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년 7월 18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내용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련

<신 설>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 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선임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으로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5년이 되는 날

2.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다만, 해당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다만, 해당일이 신축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한다)

4.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신 설>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제8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
 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
 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
 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
 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
 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
 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
 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
 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
 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자의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
 급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
 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의5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202-6416